

대구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0나4803(본소), 2021나273(반소) 판결

[물품대금 ·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6. 9.

판 결 선 고 2021. 7. 7.

제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2020. 10. 22. 선고 2020가소815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29,67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0.부터 2021. 7.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60%는 원고(반소피고)가, 4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제1심 공동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2,329,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7. 18. 소외 D에게 구미시 E 지상에 주택 및 상가를 건축하는 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23. D와 사이에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8. 7. 25.부터 같은 해 11. 7.까지 피고 주택 공사현장에 레미콘(콘크리트와 몰탈) 25,629,670원 어치를 공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3.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D는 제1심 공동피고 C이 운영하는 'F'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계약의 계약 당사자는 C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에게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C의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물품대금 25,629,670원 중 피고가 변제한 7,000,000원과 제1심 공동피고 C, 소외 D가 변제한 6,300,000원을 제외한 12,329,6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이 사건 계약의 계약 당사자가 C이 아니라 D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D의 레미콘 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레미콘대금 잔액 12,329,6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할 당시 주채무자 란에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는 C의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나중에 C의 성명과 F 상호를 적어 넣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주채무자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없어서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문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건축주로서 통상 기재하는 것이니 그냥 서명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법률적 문외한으로서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서명하였다. 피고는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사 없이 서명하였고, 설령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의사표시라고 하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인 원고도 진의 아님을 알았으므로 피고의 연대보증은 무효이며, 그렇지 않다 해도 착오 내지 원고의 기만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피고는 이를 취소한다.

3) 위와 같이 피고는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하고 원고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반소로써 7,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4) 설령 피고의 연대보증채무가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C으로부터 10,000,000원을 더 변제받았으므로 이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

3. 판단

가. 레미콘 공급계약의 당사자

원고는 이 사건 변론에서 이 사건 계약서의 레미콘 주문자 란에 D가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무렵 이 사건 계약서에 'F, C' 부분을 적어 넣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C이 아니라 D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C이 이 사건 계약의 레미콘 주문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러나 원고는 D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구하는 예비적 주장도 하고 있고, 피고도 D가 원고로부터 레미콘 공급을 받는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D의 레미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연대보증의 유효성

피고가 원고로부터 '주문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건축주로서 통상 기재하는 것이니 그냥 서명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법률적 문외한으로서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사 없이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서명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 피고의 연대보증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인 원고도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피고의 주장사실, 피고가 착오 내지 원고의 기만에 의하여 연대보증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은 모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연대보증계약 무효 내지 취소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반소 청구원인의 배척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이상, 이와 반대의 전제 위에서 반소로써 2019. 4. 3. 원고에게 변제한 7,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이 사건 레미콘대금 잔액

1)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피고 주택 공사현장 외에 구미시 G 공사 현장(이하 'G 현장'이라 한다)에서도 공사를 하였던 사실, 원고는 2018. 12. 3. D 또는 C으로부터 레미콘 대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때까지 G 현장 레미콘대금 잔액은 6,201,580원이었고, 피고 주택 공사현장 레미콘대금 잔액은 18,530,870원이었는데 그 중 17,867,900원은 G 현장 레미콘대금 잔액보다 먼저 발생한 채무였던 사실, 원고는 위 10,000,000원을 지급받아 채무가 먼저 발생한 피고 주택 공사현장의 레미콘대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피고에게 변제충당 후 당시의 레미콘대금 잔액 8,530,870원을 청구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4. 3.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 7,000,000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2. 3. 10,000,000원을 피고 주택 공사현장의 레미콘대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10,000,000원을 피고 주택 공사현장의 레미콘대금채무에 변제충당을 한 후에 C으로부터 G 현장 레미콘대금을 변제한 것이라는 말을 듣고 위 10,000,000원을 G 현장 레미콘대금에 변제충당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는 변제로 소멸한 채무에 관한 보증인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이상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도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118044, 1180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충당 변경은 기존의 충당방법을 변경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제충당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설령 그것이 주채무자와의 약정에 의한 것이더라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D 내지 C의 입장에서는 위 1000만 원이 피고 주택 공사현장의 레미콘대금과 G 현장 레미콘대금 중 어느 것에 충당되더라도 전체 채무금액에는 영향이 없어 변제충당 변경으로 얻는 이익이 없다. 위와 같이 변제충당 변경을 하면 원고가 변제자력이 있는 피고로부터 레미콘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원고에게만 이익이 발생한다. 한편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G 현장에 공급된 레미콘 대금은 총액이 9,447,020원에 불과하므로 D나 C이 2018. 12. 3. G 현장 레미콘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일은 실제로 있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변제충당 변경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이다.

3) 따라서 소외 D가 변제한 10,000,000원은 당초의 변제충당에 따라 피고 주택 공사현장의 레미콘대금 채무에 모두 충당된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레미콘대금 잔액 12,329,670원에서 위 10,000,000원을 공제하고 남는 2,329,670원이 피고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레미콘대금이다.

4. 결론

가.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329,67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최종 물품공급일 다음날인 2019. 4.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7.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치봉, 판사 서영애, 판사 서범준